

의안번호	2209424
의 퇴 인	나경원의원
회 답 일	2025.4.25.
추계번호	25D1978

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(보조금 및 출연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(제1항)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14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수호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부칙 제2조(설립준비)	국가보훈부장관은 서해수호기념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해수호기념관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함(제1항) 설립위원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3조(보조금 및 출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)	
3	안 부칙 제2조(설립준비)	

2. 상세사유

- 제정안에 따라 서해수호기념관 법인을 설립하고 임·직원을 고용하여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·보존, 국민의 안보관 정

립을 위한 국민교육, 국방 관련 세미나 또는 학술회의 개최 등 제정안에 규정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, 기본경비, 사업비, 기념관 시설 건축비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및 서해수호기념관 관람시설 규모, 주요 업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
- 제정안은 서해수호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,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, 조직, 임직원,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서해수호기념관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기념관 설립·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으로,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